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5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성환・장철민

김현정 • 민병덕 • 최기상

김태년 • 서미화 • 허 영

송옥주 · 신장식 · 김남근

이용우 · 전진숙 · 김 윤

한창민 • 백승아 • 김문수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, 노동조합, 기업,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(NGO)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.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,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러나,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'노동계', '근로자 대표', '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'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

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,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 나 배제할 경우,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 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.

이에,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'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'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,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,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 등).

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"사용자 단체"를 "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"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근로자 단체"를 "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"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이사 9명"을 "비상임이사 9명"으로, "이사에는 사용자 대표, 근로자 대표, 지역가입자 대표,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"를 "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"를 "비상임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이사"를 "비상임이사"로 한다.

- 1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
- 2.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
- 3. 지역가입자 대표 2명
- 4. 수급자 대표 2명
- 5.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

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제103조제2항제1호 중 "사용자 단체"를 "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"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"를 "전국적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"로 한다.

제104조제2항제2호 중 "사용자 단체"를 "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"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"를 "전국적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.

제3조(공단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

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 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민연금심의위원회) ①	제5조(국민연금심의위원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	2
장・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	
성하되,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	
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공익을	
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(互	
選)하며, 위원은 다음 구분에	
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	
거나 위촉한다.	
1.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	1
서 <u>사용자 단체</u> 가 추천하는	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
자 4명	
2.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	2
서 <u>근로자 단체</u> 가 추천하는	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
자 4명	<u>인 노동단체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임원) ① 공단에 임원으로	제30조(임원) ①
이사장 1명, 상임이사 4명 이	
내, <u>이사 9명</u> , 감사 1명을 두되,	<u>비상임이사 9명</u>
이사에는 사용자 대표, 근로자	<u>비상임이사는 다음</u>
대표, 지역가입자 대표, 수급자	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 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 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 <신</th>
 설>

 <신</th>
 설>

 <신</th>
 설>

-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(任免) 하고, 상임이사·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한다.
- ③ <u>이사</u>에게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(實費)

- 1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

  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
   2명
- 2.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
- 3. 지역가입자 대표 2명
- 4. 수급자 대표 2명
- 5.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 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

②
<u>비상임이사</u>
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
③ 비상임이사

는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03조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
  - ① (생략)
  -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 건복지부장관,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·농림축산식품 부차관·산업통상자원부차관· 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
     서 <u>사용자 단체</u>가 추천하는
     자 3명
  - 2.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
  - 3. 4. (생략)
  - ③ ~ ⑦ (생 략)
- 제104조(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 가위원회) ① (생 략)
  -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,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 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

제103조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
① (현행과 같음)
②
1
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
2
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
<u>인 노동단체</u>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04조(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
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(현행과 같음)
2

- 자 3명
- 3.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| 3. -----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 ---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<u>단체</u>가 추천하는 자 3명
- 4. · 5. (생략)
- ③ ~ ⑦ (생 략)

- 서 <u>사용자 단체</u>가 추천하는 ---<u>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</u>

  - <u>인 노동단체</u>-----
  - 4. 5. (현행과 같음)
  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